

「농업인월급제」 신청 · 접수 안내

농업인 월급제란

◆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일부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, 수매 후 농가가 지급 받을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며, 원금에 대한 이자는 거창군에서 전액 보전하는 제도입니다.

신청 · 접수

- 신청기간 : 2019. 4. 15.(월) ~ 5. 31.(금)
- 신청접수 : 읍·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
- 신청대상 : 농협 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
- 신청기준 : 조곡 40kg기준 최소 70가마, 최대 400가마
- 신청서류 : 신청서, 농협과 체결한 출하약정서 사본, 신용조사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

월급 지급(선지급금)

- 지급기간 : 2019. 4 ~ 10월(7개월간)
- 월급지급 : 월 30만원(연 210만원) ~ 월 170만원(연 1,190만원)
- 지급방법 : 매월 20일 신청농가에 계좌입금
 - 농협과 자체수매약정 체결한 농가에 한하여 약정수매 대금의 60% 범위 내에서 7개월간 선분할 지급
 - 매월 20일 월급지급을 원칙으로 하되, 농가에서 희망시 신청 선급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

원금 · 이자 상환

- 원 금 : 농협 자체수매 후, 선지급금 원금 상환
- 이 자 : 농업인 월급(선지급 원금) 지급 후 발생이자(기준금리 5%)는 전액 거창군에서 지원

❖ 기타문의 : 농업축산과 농정담당(☎ 940-8123) 및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